

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4. 3(수)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3. 21
- 나. 제출자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총무과장)
- 다. 회부일자 : 1996. 3. 22
- 라. 상정 및 의결
 - 제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(임시회)
 - 제1·2차 내무위원회 상정 : 1996. 4. 1~4.2
 - 제2차 내무위원회 의결 : 1996. 4. 2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총무과장 박흥우)

가. 제안사유

우리가 개청(1988. 1. 1) 당시부터 시기를 모방한 구기를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마크를 공모 제정함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내내 외적으로 우리구를 상징함과 아울러 달서자치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구기를 새로이 제작하여 활용코자 함.

나. 관련근거

-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(1984. 3. 21 대통령령 제11361호) - 구기
- 나라문장 규정(1970. 7. 3 대통령령 제5151호) - 문장, 휘장, 철인
- 달서자치구 심벌마크 제정·활용계획(1995. 12. 20 문화공보담당관)

다. 주요골자

-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를 자치구의 위상에 맞게 새로 정함(안, 제2조)
- 문장의 모양을 정하고 휘장 또는 철인을 제작 사용함(안, 제3조)
- 휘장의 수여대상을 정하고 피수여자의 예우를 규정함.(안, 제4조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황정근)

- 본 조례개정(안)은 전문개정 조례로 달서구기 등을 새로이 공모·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애郷심을 고취시키며, 자치능력을 결집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.
- 구기 등에 사용하고 있는 달서구 상징마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그 상징성이 뛰어나며, 시대감각에 맞는 색상으로 뿔어나가는 달서구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이므로 고무점으로 생각됨.
- 본 조례개정(안)에 앞서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용중인 구기 등 형상은 「별지로 정하여」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정통념상의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됨.
- 우리 구의 특성을 부각시킨 구기, 문장, 휘장 철인 등에 대하여 그 모양, 형태, 색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(답변자 : 총무과장 박홍우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달서구의 법인 명칭은 대구광역시달서구로 법규상 명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의 별표 1. 2. 3에 달서구를 달서자치구로 법인명칭을 바꾼 사유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달서구의 법인명칭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○ 구기 등을 달서자치구로 표기한 것은 일반구와 구분을 용이 하도록 하고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에 대한 자치의식 함양을 위함이라 사료됨.

5. 토 론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